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승진규칙

제 정 2017. 12. 20
개 정 2023. 02. 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24조에 의한 직원의 승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적용) 직원의 승진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10조,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제규정」 제3조,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3조 등에서 정하는 전문직, 연구관리직의 직급별, 직군별 정원에 포함되는 본 산학협력단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승진의 기준) 직원의 승진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24조의2의 현 직급 재직년수를 충족하고 「직원인사규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종합심사 한다.

제4조(승진 인원) 승진 인원은 산학협력단 경영상 필요로 하는 직급별 수요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필요시에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인원을 심의 검토할 수 있다.

제5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은 현직급 재직기간만을 평정대상으로 한다.
② 경력평정은 산학협력단장이 이를 행한다.
③ 재직 중 상급학교 졸업 등 경력상승 요인발생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근무평가 및 결과의 반영) ① 승진대상자의 선정은 최근 5개년도 또는 6개년도의 근무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연도별 반영비율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3.02.07.>

근무평가 반영비율	승진구분	평가대상연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B급 승진대상	15%	20%	20%	20%	25%	-	100%
	C급 승진대상	15%	20%	20%	20%	25%	-	100%
	D급 승진대상	15%	15%	15%	15%	20%	20%	100%

② 승진심사 대상자의 선정은 직종(전문직, 연구관리직), 직급(A~D)으로 구분하여 선정

하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승진구분	승진심사 대상자 기준	
	승진심사 대상자 기준 비율	해당직급 총 재직기간 중 취득 평균점수
B급 승진대상	직종별 동일직급 80%이내	85점 이상
C급 승진대상	직종별 동일직급 60%이내	85점 이상
D급 승진대상	직종별 동일직급 50%이내	85점 이상

③ 근무평가에 따른 제반사항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근무평가규칙」에 의한다.

제7조(면접평가) 산학협력단장은 승진후보자에 대하여 리더십, 직무수행능력 등의 면접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승진 후 연차연봉 책정) 승진된 자의 연차연봉 책정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24조에 따른다.

제9조(승진제청) 직원인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 중에서 직원인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승진대상 후보자 중에서 승진자를 추천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산학기획팀-2318: 2023.02.0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6조 제1항은 2022학년도부터 적용한다.